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*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,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.

■ 계약기간

이용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 유효기간까지로 서비스를 제공한다.

■ 계약목적

서비스계약은 시설, 이용자, 보호자간에 신뢰성을 가지도록 하고, 책임있는 서비스 수행이 되도록 보험료 산정 및 보호서비스 내용에 대하여 상호간의 약속을 정한다.

■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

가.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 및 비용청구지침의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. 급여비용 중 월한도액 초과비용은 본 센터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부담한다.

나. 비용부담은 매월 이용한 만큼의 본인부담금을 센터로 납부한다.

- 장기요양인정자 : 장기요양수가 금액의 15%

(경감대상자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무료)

※ 상세한 이용료는 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 금액을 따른다.

※ 기타 경감대상자는 별지 참조 :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 (별표 1 참조)

■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

가. 신원인수 방법 :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센터

나.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를 철저히 기하며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다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
1)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2)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3)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
4)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5)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
6)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,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
7)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
8) 서비스 해지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
9)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·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

라.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보증인)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

1)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·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
2)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,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
3)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

4)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

5)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·집기 등의 오손, 파손, 면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

■ **계약의 해지**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가.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

나.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,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.

다. 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

라. 이용자가 퇴원에 대한 기약 없이 1개월 이상 지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

마.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

바.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센터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,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

사.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센터에게 손해를 가한 때

아.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

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(2025.01.01)

○ 치매전담 주·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(원)

구분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
3시간이상~6시간미만	47,330	43,700	41,700	39,700	39,700
6시간이상~8시간미만	63,490	58,600	56,620	54,590	54,590
8시간이상~10시간미만	78,990	72,900	70,930	68,900	68,900

○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

구 분	금액(원)	구 분	금액(원)
30분	16,940	150분	49,160
60분	24,580	180분	55,350
90분	33,120	210분	61,670
120분	42,160	240분	68,030

○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(원)

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	인지지원등급
2,306,400	2,083,400	1,485,700	1,370,600	1,177,000	657,400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○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

구 분	재가급여
일반	15%
기초수급권자	0%
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 1항에 해당하는 수급자의 경우(월별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0~25% 이하에 해당 되는 등)에는 본인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.	6%
월별보험료액이 보험료 순위 25%초과~50% 이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본인일부 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.	9%

○ 비급여 항목(치매전담 주·야간보호)

중식비	간식비	비고
1,000원	1,000원	